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구정방향

함께 가꿔요!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65호 2011. 12. 12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47호(도로명주소 고시)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48호(도로명주소 고시) 3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-905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 조례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) 5

회							
람						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12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12번길 34의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79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 12.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-83	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12번길 34	신축	2009-05-14	벤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-16	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100번길 2	신축	2010-06-24	벤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,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12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30번길 4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 12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변경 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	변경전	변경후	변경 전	변경 후			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47-18,	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30번길 4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30번길 2	출입구 오류	2009-12-09	청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0m지점에서 오른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 조례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1년 12월 6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개정취지

○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 어려워 임대료,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,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을 「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」에서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」로 변경한다.
- 안 제1조(목적)
 - 근거법령인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 추가
 - 지원항목을보안등전기요금(가로등 포함)에서 공동전기요금으로 확대
- 안 제2조(정의)
 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하고자 추가

- 안 제3조(지원대상)
 -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설물 구체화

- 안 제4조(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)
 - 비용청구 방법 및 지원범위 구체화

- 안 제5조(시행규칙 등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길 115(참조 : 주민생활지원과장)】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☎810-7853, FAX 810-7229)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관리주체"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. 다만,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.
2. "공동전기요금"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(단지 내 가로등 포함),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, 정화조,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, 관리동 전기요금
2.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
3.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
4.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

제4조(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)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